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 규정

제정 1980.11. 1. 제 24호 개정 2010. 3. 5. 제527호 개정 2011. 2.14. 제552호 개정 2012. 3.28. 제596호 개정 2013.10.25. 제635호 개정 2015. 4. 2. 제668호

- **제1조**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내 사무를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**(적용)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관련업무의 처리) 업무단위가 2이상의 과 및 부속시설에 관련되는 사항은 가장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그 비중이 동일하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.
- 제4조(교학처) 교학처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- 1. 대학(원) ·학부·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
 - 2. 각종시험의 관리
 - 3. 교과과정의 편성, 개편 및 조정
 - 4. 교원의 인사관리
 - 5. 교원 및 학생의 정원관리
 - 6. 관인관리(제증명발급용)
 - 7. 교원의 복무관리
 - 8. 교원의 교육 및 연수
 - 9. 교원의 상훈 및 징계
 - 10. 교원 및 학생의 제증명 발급
 - 11. 교원의 강의평가
 - 12. 학칙의 제정 · 개정 및 변경
 - 13. 시간강사 위촉
 - 14. 입학 · 휴학 · 복학 · 편입 · 제적 · 졸업 · 전과 · 등록
 - 15. 학적(력) 조회
 - 16. 학적부 관리
 - 17. 학위수여

- 18. 수강신청
- 19. 수업시간표 작성
- 20. 실험 · 실습 및 수업관리
- 21. 강의실 및 연구실 배정
- 22. 교원자격증 발급
- 23. 교원의 업적평가(교원성과급 포함)
- 24.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
- 25. 학적 통계
- 26. 수업교재관리(전문실기교원 교재 제외)
- 27. 교외 교육의 지도
- 28. 학점 및 성적관리
- 29. 교수 책임시간 조정
- 30.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
- 31. 학사 징계
- 32. 교무과 소속 각종위원회(대학원위원회 포함)운영 및 위원 임면
- 33. 부속시설 및 연구소 평가
- 34. 기타 교무행정에 필요한 사항
- 35. 학생병사 업무
- 36. 학생활동의 상담지도 및 지원
- 37. 학생회 운영 지도
- 38. 학생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- 39. 학생 해외 유학 추천
- 40. 장학생 선발
- 41. 각종 간행물에 대한 지도감독
- 42. 학생의 동원에 관한 사항
- 43. 학생증 발급
- 44. 학생의 행사 및 집회에 관한 사항
- 45. 기성회 감면자 선발
- 46. 학생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- 47. 학생 후생 복지시설의 관리
- 48. 후생복지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
- 49. 학생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
- 50. 총동문회 사무에 관한 사항
- 51. 학생과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면

52. 학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

제5조(기획처) 기획처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5.4.2>

- 1. 대학발전에 관한 종합계획
- 2.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(주·월간업무포함)
- 3.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평가에 관한 사항
- 4. 자체평가(학과평가, 행정부서평가,부속시설 평가 등)에 관한 사항
- 5. 평가 인증제에 관한 사항
- 6. 정부재정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- 7.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
- 8. 정부 3.0에 관한 사항
- 9. 대학요람 발간에 관한 사항
- 10. 각종교육통계 및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
- 11.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12.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
- 13. 기타 대학발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제6조(훈련처) 훈련처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각종대회 출전 관리(선수등록 및 실적관리)
- 2. 경기기술개발 및 정보수집
- 3. 학생훈련계획 수립 추진
- 4. 학생출전, 국가대표선수 관리
- 5. 훈련용 기구관리
- 6. 전문실기 종목의 연구개발
- 7. 전문실기 지도교수 및 시간강사 추천
- 8. 훈련 지도를 위한 연구 및 특별강연과 강습
- 9. 국내외 전지훈련 및 교환경기에 관한 업무
- 10. 경기력에 의한 생활관 입ㆍ퇴사 결정
- 11. 훈련과 소속 각종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면
- 12. 체육관 운영에 관한사항
- 13. 체육관 관리
- 14. 체육박물에 관한 자료수집·보관·전시 등에 관한 사항
- 15. 외부에서의 단체훈련 및 부별 시합 시 출장 진료
- 16. 기타 체육특기자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13.10.25>
- 제7조(사무국) 사무국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 - 1. 보안에 관한 사항

- 2. 관인관리
- 3. 문서의 수발, 통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
- 4. 공무원(일반직·기능직·별정직공무원"이하같음)의 임용과 교육전문직의임용 및 임용 제청
- 5.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
- 6.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(직장교육훈련 포함)
- 7. 공무원의 인사 통계
- 8.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
- 9.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
- 10.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획정
- 11. 공무원의 정원 관리
- 12. 공무원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
- 13. 공무원증 발급 및 공무원의 제증명 발급
- 14.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
- 15. 교직원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
- 16. 교직원 연금에 관한 사항
- 17. 당직명령 및 당직관리에 관한 사항
- 18. 관용차량 관리
- 19. 감사에 관한 사항
- 20. 교직원 보건, 후생업무에 관한 사항
- 21. 법령, 예규, 규정공포 및 관리
- 22.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
- 23. 총장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
- 24. 직장협의회 및 직원 상조회 운영
- 25.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
- 26.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
- 27. 예산, 결산 및 회계
- 28. 물품의 구매계약
- 29. 지출관 사무
- 30. 세입세출현금 출납
- 31.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
- 32. 유가증권 취급
- 33. 원천징수업무에 관한 사항
- 34. 기성회 사무 및 기성회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- 35. 국고보조금 업무에 관한 사항
- 36. 공사 및 납품실적증명 발급
- 37. 회계직공무원 임면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
- 38. 입찰 및 계약사무
- 39. 수입대체경비 출납
- 40. 회계직공무원 직인관수
- 41. 학생공납금 징수결정 및 수납
- 42. 급여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
- 43. 학생 상해보험 계약 및 보험금처리에 관한 사항
- 44. 교직원 저축 및 적금에 관한 사항
- 45. 시설종합계획 수립
- 46. 시설사업 심사분석
- 47. 공사계획,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
- 48. 공사 준공 검사
- 49. 시설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- 50.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건축협의
- 51. 관급자재관리 및 수불부 정리
- 52. 공사대장 정리
- 53. 하자보수대장 정리
- 54. 설계도면 관리
- 55. 영선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
- 56. 전기, 통신시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- 57. 기계 및 위생난방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
- 58. 조경계획 및 수목관리
- 59. 국유재산 관리
- 60. 전기안전관리자 선ㆍ해임사항
- 61. 보일러가스, 위험물취급자 선ㆍ해임사항
- 62.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
- 63.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64. 자체방화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- 65. 물품 검수, 출납 및 관리
- 66. 물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
- 67. 조달물품수급에 관한 사항
- 68. 실험실습기자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

- 69. 재물조사
- 70. 물품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71. 총무과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면
- 72.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
제8조(학술정보원) 학술정보원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도서, 연속간행물, 비도서자료의 선정, 구입, 기증 및 교환
- 2. 도서, 연속간행물, 비도서자료의 등록, 분류, 편목, 제적 및 폐기
- 3. 도서, 연속간행물, 비도서자료의 열람, 대출 및 자료실 관리
- 4. 서버관리 및 운영
- 5. 종합정보시스템 개발·운영·관리
- 6.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
- 7.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
- 8.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
- 9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- 10. 매체제작실 관리 및 운영
- 11. 컴퓨터 관련 수업 지원
- 12.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관리

제9조(평생교육원) 평생교육원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사회교육업무에 관한 사항
- 2.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양,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3. 성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4. 경기지도자연수에 관한 업무
- 5. 경호경비교육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외부위탁연수에 관한 업무

제10조(생활관) 생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생활관 및 학생식당 관리
- 2. 생활관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
- 3. 학생급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생활관내의 학생복지 및 후생시설 관리
- 5. 기타 생활관 관리에 관한 사항

제11조(종합인력개발원) 종합인력개발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학생 진로지도
- 2. 학교생활 및 취업을 위한 조사연구
- 3. 취업 및 아르바이트 알선

- 4. 학생생활상담을 통한 심리지도
- 5. 취업 및 교양 특강
- 6. 성희롱, 성폭력 관련 업무"

제12조(교수학습개발센터)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교수법 및 학습법 향상을 위한 업무
- 2. 교육매체 지원에 관한 업무
- 3. 이러닝 정책 및 운영 전략 관련 업무

제13조(스포츠클리닉) 스포츠클리닉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13.10.25>

- 1. 학생 및 교직원의 진료 및 치료
- 2. 학생 및 교직원의 한방진료
- 3. 학생 및 교직원의 투약 및 응급처치
- 4. 학생 및 교직원의 침·한약치료 및 한방 응급처치
- 5. 학생 및 교직원의 한・양방 건강상담
- 6. 학생상해보험에 관한 사항
- 7. 전염병 예방(접종ㆍ방역ㆍ수질)에 관한 사항
- 8. 방사선 검사에 관한 사항
- 9. 진료기록 및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

제14조(체육과학연구소) 체육과학연구소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체육과학 발전에 필요한 연구자료의 조사, 수집, 분석 및 응용연구
- 2.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발표회 개최
- 3.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
- 4. 정부 체육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
- 5. 체육과학연구소 소속 실험실 관리 운영
- 6. 체육과학연구소 소속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면
- 7. 기타 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

제15조(산학협력단) 산학협력단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13.10.25>

- 1.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·조정 및 산학연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
- 2.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
- 4. 연구교수제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산학협력단 회계관리(예산편성, 지출 등)
- 6.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6조 (대외협력단) 대외협력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15.4.2>

1. 대학의 홍보에 관한 사항

- 2. 국내·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(산학연협력 제외)
- 3. 대외협력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외국인숙소 운영관리
- 5 기타 대학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
부 칙 (1980. 11. 1 제24호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전 처리된 업무는 이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1985. 3. 1 제5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0. 9. 14 제92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5. 10. 11 제 159호)

이 규정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7. 4. 18 제20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7. 5. 8 제209호)

이 규정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9. 3 .23 제267호)

이 규정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1. 9. 1 제345호)

이 규정은 2001. 9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3. 10. 7 제407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. 7. 1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06. 4. 27. 제472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 3. 5. 제527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1. 2. 14. 제552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1. 1. 1.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12. 3. 28. 제59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10.25. 제63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 4. 2. 제668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